

수요 기반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 검토

채은경 | 도시사회연구부장

배경과 목적

- 인천 지역 도시 성장에 따른 급격한 인구 및 사업체 증가로 사법서비스 수요 증가
- 광역시 중·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인천과 울산임
- 인천의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 합리적 논거를 보강하여 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확보
- 고등법원 관련 법·제도 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의 사법서비스를 둘러싼 여건, 항소심 건수 추정, 시민 및 전문가들의 수요 조사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 제기를 목적으로 함

정책제안

- 법·제도 검토, 인천 지역의 인구 규모, 소송사건 수 등의 여건 분석 결과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과포화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음
- 특히, 인천시는 섬 지역이 존재하여 사법서비스 제공에 제한적인 지역이 존재하며, 도시철도를 통하여 대중교통으로 서울고등법원 접근이 가능하기는 하나, 상당한 시간이 걸림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법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 본 연구를 통하여 인천고등법원이 설립될 경우 최소 항소심 건수를 추정한 결과 고등법원 설립에 충분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인천 시민 및 전문가 집단에 대한 수요 조사 결과에서도 고등법원 설립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률 개정을 통하여 인천고등법원 설립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바이며, 인천 지역 여건은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
- 인천고등법원 설립은 계량적 편익 이외에도 비계량적 지역사회 파급효과가 존재하므로 향후 인천 고등법원 설립을 위해서는 발생가능한 갈등요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인천 고등법원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협력과 공동된 의지를 확인하고 주장하기 위한 계기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1 왜 인천시에는 고등법원이 없는가

◆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고등법원 관련 법·제도 검토

□ 고등법원 설치 근거 법령 검토

- 우리나라 헌법 제101조 제2항에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제102조 제3항에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즉,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하위법원의 종류와 조직은 법률에 위임함을 알 수 있음
- 「법원조직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인데, 고등법원 등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제3조 제3항)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등법원 확대와 변화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은 「법원조직법」제3조 제3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이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각급 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가 구분되어 있음. 수원고등법원 등을 설치함에 따라 2014년 본 법률을 공포하고 2019년에 시행하도록 하였음

[표 1] 각급 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별표 1] 일부)

고등법원	소재지	비고
서울고등법원	서울특별시	1963년 법률 제정 및 시행
대전고등법원	대전광역시	1986년 법률 개정안 반영, 1992년 설치
대구고등법원	대구광역시	1963년 법률 제정 및 시행
부산고등법원	부산광역시	1986년 법률 개정안 반영, , 1987년 설치
광주고등법원	광주광역시	1963년 법률 제정 및 시행, 1952년 설치
수원고등법원	수원시	2014년 법률 개정 및 2019년 시행

- 위 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과 대구고등법원은 일제강점기에 처음 설치되어 1948년 서울고등법원과 대구고등법원으로 개칭이 되었으며, 이후 광주고등법원이 설치되었음.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특·직할시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음. 다만, 인천시의 경우에만 직할시로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과의 접근성이라는 차원에서 고등법원 설치되지 못함
- 수원고등법원 설치 이전에는 행정제도와 어느 정도 일치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수원고등법원 설치는 고등법원 설치에 중요한 요소로서 지역의 중심지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사법서비스 수요도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요소로 작용함

● 지방자치제도와 일치하지 않는 고등법원 관할구역의 문제

□ 서울 일극 중심적인 법원 행정체제의 문제

- 인천시는 직할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지역적 안배로 경상도와 전라도에 고등법원이 우선적으로 설치됨으로써 충청권 북부 지역의 법원 수요는 모두 서울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 서울 고등법원 소속의 지방법원과 소속 지원의 관할구역을 보면 명백히 알 수 있음. 서울 고등법원 이하 서울에는 지방법원이 5개 정도 있는데 비하여 인구 규모가 서울의 1/3인 인천시의 경우 1개의 지방법원이 부천시와 김포시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교통 이동의 편의성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서울 이외의 지역은 도시철도를 이용하여 움직일 수 있는 지역이 제한적이고, 전체적인 법원 행정체제가 서울 일극 중심적임을 알 수 있음
- 도시철도로 연계성이 높은 서울 지역 내에는 지방법원 곳곳에 존재하나 면적이 넓은 지역인 강원도와 인천시의 경우 가장 최상의 법원체계가 지방법원이 존재함으로써 주민의 사법서비스 향유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임

[표 2]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별표 3] 일부)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원	관할구역
서울	서울중앙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
	서울동부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강동구·송파구
	서울남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
	서울북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도봉구·강북구·노원구
	서울서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용산구
의정부			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포천시, 강원도 철원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군 외에 고양시·파주시·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
	고양		고양시·파주시
	남양주		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
인천			인천광역시
	부천		부천시·김포시
춘천			춘천시·화천군·양구군·인제군·홍천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철원군을 제외한 강원도
	강릉		강릉시·동해시·삼척시
	원주		원주시·횡성군
	속초		속초시·양양군·고성군
	영월		태백시·영월군·정선군·평창군

주: 2025.3.1.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에 북부지원이 신설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구, 강화군을 관할하게 됨

□ 주민에게 익숙하지 않은 법원의 ‘관할구역’ 제도

-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자치행정체제에는 익숙한 반면, 이와 일치되지 않는 관할 구역에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임
- 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가 명백히 다른 행정 구역으로 이루어져서 주민들에게는 ‘서울시민’, ‘인천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한 데 비하여 인천시민이 서울고등법원을 상위 사법체계로서 수용해야하는 점은 여전히 수도권내 행정서비스 이용의 불평등을 의식할 수 밖에 없음
- 서울고등법원 산하 의정부, 인천, 춘천은 모두 이러한 사법행정체제 하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실제적 불편함과 더불어 심리적 불편함 역시 느낄 수 밖에 없는 환경임
- 특히, 광역시로서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서울과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인구 300만 도시인 인천의 경우 이러한 심리적 불편함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음

2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여건 분석

◆ 고등법원 설립기준과 객관적 지표

□ 일반적 고등법원 설치기준

- 일반적 고등법원 설치기준에 따르면,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확장과 지방분산 배치,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 등을 위하여 고등법원 설치를 고려하여야 함

-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기준
-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확장과 법원의 지방분산 배치
- 지방의 사법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

□ 고등법원 설치의 객관적 지표

- 위 일반적 고등법원 설치기준은 계량화하기가 어려움. 따라서 객관적 지표로 다음과 같은 같은 지표로 평가할 수 있음

- 인구 규모	- 교통접근성	- 소송 사건수
- 지역적 특성	- 관할 면적	-

◆ 고등법원 설립 객관적 지표: 인구 규모, 소송 사건 수, 관할 면적

□ 인구 규모, 소송 사건 수, 관할 면적에서 과포화 상태인 서울고등법원

- 위 객관적 지표로 볼 때, 수도권 지역의 기존 고등법원 외 추가 설치 수요가 높음
- 인구 규모(관할 인구) 측면에서 볼 때, 대전, 대구, 광주에 비하여 3.6배 이상임

※ 서울고등법원 관할구역의 인구는 2011년 대비 2020년 12만 명 이상 증가하였음. 그러나 서울지역의 지방법원 관할구역 인구는 지난 10년간 감소한 데 반해,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의 인구는 증가함. 특히 인천지방법원의 인구는 2011년 3,930,720명에서 2020년 4,235,181명으로 10년간 304,461명(7.7%) 증가하였음

- 압축적인 대도시 지역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면적도 가장 큼
- 이에 따라 관할 구역내 지법 수로 볼 때에도 다른 곳의 최소 2.5배 이상, 최대 8배임을 알 수 있음

[표 3] 고등법원 관할범위

(단위: 명, km²)

고등법원	관할인구(명)	관할 면적(km ²)	관할구역 내 지법·지원 수		원외재판부
			지방법원	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18,941,683	23,787	8개 지법 7개 지원	2개 가정, 1개 지원	춘천, 인천
대전고등법원	5,541,579	16,658	2개 지법, 8개 지원	1개 가정, 5개 지원	청주
대구고등법원	5,057,768	19,918	1개 지법, 8개 지원	1개 가정, 7개 지원	-
부산고등법원	7,868,179	12,373	3개 지법, 7개 지원	2개 가정	창원, 울산
광주고등법원	5,780,350	22,769	3개 지법, 7개 지원	1개 가정, 4개 지원	제주, 전주
수원고등법원	8,639,464	4,909	1개 지법, 5개 지원	1개 가정, 5개 지원	-

주: 인구는 2020년 기준으로, 이후 분석에서 이용하는 사법연감 통계가 2020년 자료로 분석 시점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2020년 인구를 제시함. 다만, 인구현황 분석에서는 최근 통계인 2021년 통계를 이용함
 자료: 관할인구-국가통계포털(<http://kosis.kr>)_주민등록인구; 관할 면적-법제사법위원회(2020)

- 고등법원 법관 수는 서울고등법원이 209명으로 가장 많으나, 판사 1인당 인구는 서울고등법원이 142,419명으로 가장 적으며, 판사 1인당 소송사건 수는 서울고등법원이 98.85건으로 가장 많음. 이는 전반적으로 서울고등법원에 역량과 전문성이 집중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4] 고등법원의 법관현황

(단위: 명, 건)

고등법원	법관 수(명)				인구수 (명)	판사 1인당 인구(명)	판사 1인당 사건 수
	법원장	부장판사 및 재판연구관	판사	계			
서울고등법원	1	75	133	209	18,941,683	142,419	98.85
대전고등법원	1	10	22	33	5,541,579	251,890	69.00
대구고등법원	1	8	17	26	5,057,768	297,516	69.69
부산고등법원	1	14	30	45	7,868,179	262,273	79.82
광주고등법원	1	10	25	36	5,780,350	231,214	70.33
수원고등법원	1	13	26	40	8,639,464	332,287	88.50

주: 법관 수와 인구수는 2020년 기준임
 자료: 법관수-법원행정처(2021). 2021 사법연감; 인구수-국가통계포털(<http://kosis.kr>)_주민등록인구

- 서울고등법원 소송 집중현황은 두드러짐. 2020년 고등법원 전체 소송사건은 본안 34,412건, 본안 외 42,944건 중 서울고등법원이 본안 20,659건, 본안 외 23,557건으로 가장 많음. 민사, 가사, 행정, 형사 모든 분야에서 서울고등법원의 소송건수가 다른 고등법원에 비하여 월등히 많음
- 전체 본안소송 중 서울고등법원의 비중이 60.0%로, 본안소송 절반 이상이 서울고등법원에 집중됨

[표 5] 고등법원 소송사건 수(2020년 기준)

(단위: 건)

2020년 기준	합계		민사		가사		행정		형사		
	본안	본안 외	본안	본안 외	본안	본안 외	본안	본안 외	공판	치료 감호	본안 외
서울고등법원	20,659	23,557	12,669	4,933	514	346	4,070	1,326	3,371	34	16,951
대전고등법원	2,277	3,688	815	453	98	50	496	199	861	7	2,986
대구고등법원	1,812	2,748	725	407	65	28	284	128	721	17	2,185
부산고등법원	3,592	5,127	1,430	760	187	76	601	227	1,361	13	4,064
광주고등법원	2,532	3,406	914	569	80	46	502	164	1,018	18	2,627
수원고등법원	3,540	4,418	1,662	900	170	79	560	159	1,140	8	3,280
계	34,412	42,944	126	8,022	1,114	625	6,513	2,203	8,472	97	32,093

자료: 법원행정처(2021). 2021 사법연감

- 고등법원 설립 기준과 가장 상관성이 높은 단위 인구(인구 10만 명)당 항소심 건수 연도별 변화를 보면,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한 단위 인구당 항소심 건수가 가장 많은 고등법원은 서울고등법원으로 (2020년 기준 109.1건) 다른 고등법원의 2배 이상이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소 104.0건에서 최대 128.1건의 범위에서 움직임

[표 6] 인구 10만 명당 전체 항소심 건수

(단위: 건/10만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서울고등법원	113.5	119.4	119.1	118.9	116.4	125.1	128.1	104.0	120.4	109.1
대전고등법원	45.3	57.9	50.7	56.8	54.1	50.4	46.2	43.1	46.0	41.1
대구고등법원	38.6	44.5	39.6	45.3	42.2	43.7	38.5	35.9	38.5	35.8
부산고등법원	47.7	50.9	54.1	59.0	54.7	54.8	47.7	47.5	45.3	45.7
광주고등법원	49.2	53.5	51.7	59.8	57.8	54.8	50.9	48.5	51.2	43.8
수원고등법원									31.6	41.0
계	294.4	326.2	315.1	339.9	325.2	328.8	311.4	279.1	332.9	316.4

주: 인구 10만 명당 항소심 건수를 산출하기 위해 각 연도별 주민등록인구자료를 이용함

자료: 항소심 건수-법원행정처(각년도). 사법연감; 인구-국가통계포털(<http://kosis.kr>)_주민등록인구

● **고등법원 설립 객관적 지표: 교통접근성, 지역적 특성**

□ 교통접근성, 지역적 특성으로 본 인천고등법원의 필요성

- 장래인구추계 결과, 인천지역의 인구는 2037년까지 43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반해 대구고등법원은 2037년 45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노인인구의 경우 2037년 1,294,347명으로 증가하는데, 2030년에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의 사법서비스 수요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음(사업체 수: 2013년 257,822개에서 2019년 301,660개로 6년간 43,837개 증가, 종사자 수: 2013년 1,237,539명에서 2019년 1,441,764명으로 6년간 20만 명 이상 증가)
- 인천지역의 접근성은 도서지역 등 인천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보다 유연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가장 최근에 설립된 수원고등법원의 경우 시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바도 있음

[표 7] 인천지역의 서울고등법원 접근성

(단위: 분, 명)

구분	평균 통행시간(분)		인구수 (2021)	노인인구수 (2021)	
	대중교통	승용차			
인천광역시	계	96.3	78.5	2,948,375	435,431
	중구	112.7	90.5	143,633	21,735
	동구	108.5	88.8	61,486	14,670
	미추홀구	104.3	85.7	407,464	41,021
	남동구	92.2	74.0	389,644	75,633
	서구	98.0	63.8	518,272	76,493
	부평구	90.0	68.3	486,765	40,840
	계양구	103.7	71.5	295,696	63,203
	연수구	99.0	66.3	555,380	72,320
	강화군	171.8	94.5	69,693	23,751
	옹진군	-백령도(배편 4시간)+대중교통 120분(승용차 45분) -연평도*배편 2시간+대중교통 120분(승용차 45분)		20,342	5,765
경기도	부천시	91.2	63.5	806,067	118,668
	김포시	85.3	70.2	806,067	62,780
가중평균(합계)		96.1	71.5	4,240,950	616,879

주: 네이버지도서비스 이용, 주중 오전 9시~10시 및 오후 3시~4시 사이에 측정된 평균값. 섬 지역인 옹진군은 제외
 자료: 이인재 외(2020)를 토대로 재구성,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_주민등록인구

- 인천지역에서 서울고등법원까지의 평균 통행시간은 대중교통으로 96.1분, 승용차로 71.5분으로, 인천에서 서울고법까지 가기 위해서는 거의 2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왕복 거의 3~4시간 소요됨
- 특히, 강화군에서 서울고등법원까지는 대중교통 171.8분, 승용차 94.5분으로, 대중교통의 경우 거의 3시간이 소요되는데, 다수의 섬의 이루어진 옹진군의 경우 접근성은 더욱더 떨어짐
- 옹진군 섬 지역주민들의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열악한데, 옹진군 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최소 1시간 10분(덕적도)에서 최대 4시간(백령도) 배를 타고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까지 온 다음(북도, 영흥도 제외), 다시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대중교통으로는 거의 2시간, 승용차로는 45분 정도 걸려서 서울고등법원까지 이동해야 함
- 또한 1일 배편 횟수가 정해져 있어 1일 안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등의 업무를 본 다음, 집으로 귀가하는 것이 어려워,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들이 소요됨

[그림 1] 인천 도서 지역과 강원도 일부 지역의 서울고등법원과의 직선거리 비교



주: 네이버 지도서비스를 이용하여 서울고등법원과 각 지역들의 직선거리를 측정함

3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항소심 건수 추정

- 증가하는 인천지방법원 1심 민사본안 소송건수와 항소심의 증가
 - 2020년 기준 인천지방법원의 1심 민사본안 소송건수는 전국 19개 지방법원 중 서울중앙, 수원 다음 3번째로 많으며, 서울고등법원 관할 지방법원 중 10년 연평균 인천지방법원 비중은 13.6%로, 서울중앙지법(42.0%) 다음으로 높음¹⁾
 - 2011~2020년을 기준으로 인천지방법원의 항소심 민사본안 사건은 2011년 2,646건에서 2020년 3,405건으로 10년간 700건 이상 증가함(인천지방법원 증가율 28.7%)
 - 인천지방법원의 경우, 2019년 대비 2020년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1년간 300건이 증가하여 9.9%의 증가율을 보임

[표 8] 1심 민사본안 합의 및 단독사건 수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인천 지방법원	15,033	15,401	16,981	17,009	14,015	13,427	11,786	12,630	12,809	12,748
부천지원	5,584	5,526	5,946	6,219	5,547	5,591	4,271	4,814	4,984	5,947
계	20,617	20,927	22,927	23,228	19,562	19,018	16,057	17,444	17,793	18,695

자료: 법원행정처(2021). 2021 사법연감

[표 9] 항소심 민사본안 사건 수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인천 지방법원	2,646	2,777	2,683	2,592	3,095	3,294	3,310	3,133	3,097	3,405

자료: 법원행정처(2021). 2021 사법연감

- 인천지방법원의 제1심 행정소송 사건 수는 2011년 835건에서 2020년 1,512건으로 10년간 677건 증가하여 81.1%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인천지방법원의 제1심 형사공판 합의 및 단독사건은 2011년 21,945건(16,582건+5,363건)에서 2020년 24,863건(17,471건+7,392건)으로 10년간 13.3% 증가함

1) 서울고등법원 관할 지방법원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연평균 1심 민사본안 합의 및 단독 소송건수는 서울중앙 60,817건, 서울회생 102건, 서울동부 10,515건, 서울남부 12,872건, 서울북부 8,907건, 서울서부 10,732건, 의정부 14,869건, 인천 19,639건, 춘천 6,365건으로, 서울고등법원 관할 지방법원 전체 소송건수(144,817건)에서 각 지방법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함(법원행정처, 2021)

[표 10] 인천지방법원 제1심 행정소송과 형사소송 사건 수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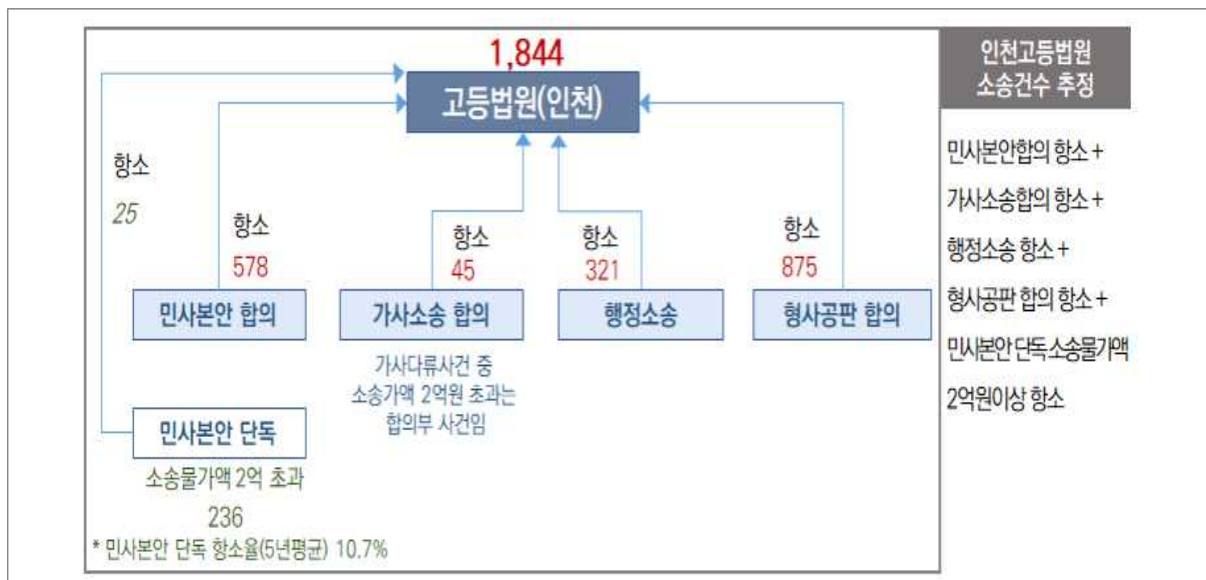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행정소송 (인천)	835	894	889	925	895	919	934	1,217	1,316	1,512
1심 형사공판 (인천+부천)	16,582	20,728	16,368	17,157	15,797	16,105	15,350	15,285	15,235	17,471
1심 형사공판 (부천)	5,363	5,772	5,946	6,129	6,227	6,325	5,490	5,598	6,685	7,392
항소심 형사공판 (인천)	5,158	4,529	4,496	5,865	5,765	6,298	5,568	5,019	5,176	5,510

자료: 법원행정처(2021). 2021 사법연감

□ 인천고등법원 설치 시 항소심 건수 추정 결과: 1,844건(인천) > 1,812건(대구)

- 인천고등법원 설치 시 항소심 건수 추정결과는 최소 1,844건으로, 이는 현재 대구고등법원 건수 1,812건 보다 많음
- 인천지방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접수되는 항소심은 향후 인천고등법원 설치 시 인천고등법원의 항소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면 되지만 해당 데이터가 없어 고등법원의 심판권을 근거로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될 경우의 항소심 건수를 추정함
- 소송유형별 인천지방법원(1심 합의)의 사건 처리 중 ‘항소’ 수의 5년 평균값 산출 + 민사본안소송 청구소송물가액 2억 원을 초과하는 항소심 수 추정 = (578+45+321+875) + 25 = 1,819 + 25 = 1,844건

[그림 2] 인천고등법원 접수될 항소심 건수 추정



- 형사공판 합의 항소심 접수 건수(875건)는 대구고등법원 뿐만 아니라 대전고등법원보다 높아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

[표 11] 인천고등법원 항소심 건수 추정과 타 고등법원 항소심 건수 비교 (단위: 건)

구분	합계	민사	가사	행정	형사
서울고등법원	18,815	12,066	469	3,749	2,530
인천고등법원(추정치)	1,844	603	45	321	875
대전고등법원	2,277	815	98	496	868
대구고등법원	1,812	725	65	284	738
부산고등법원	3,592	1,430	187	601	1,374
광주고등법원	2,532	914	80	502	1,036
수원고등법원	3,540	1,662	170	560	1,148

주1. 인천고등법원은 추정치이고, 나머지 고등법원은 2020년 자료임
 주2: 서울고등법원은 기존 서울고등법원 자료에서 인천고등법원 추정치를 뺀 값임

- 단위 인구(인구 10만 명)로 환산하면, 인천고등법원 설치 시 접수될 항소심 건수는 인천고등법원 설치 시 인천고등법원에 접수될 항소심 건수는 단위 인구당 43.5건으로,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보다 많음

[표 12] 인구 10만 명당 인천고등법원 항소심 건수 추정과 타 고등법원 항소심 건수 비교 (단위: 건)

구분	합계	민사	가사	행정	형사
서울고등법원	127.9	82.0	3.2	25.5	17.2
인천고등법원(추정치)	43.5	14.2	1.1	7.6	20.7
대전고등법원	41.1	14.7	1.8	9.0	15.7
대구고등법원	35.8	14.3	1.3	5.6	14.6
부산고등법원	45.7	18.2	2.4	7.6	17.4
광주고등법원	43.8	15.8	1.4	8.7	17.9
수원고등법원	41.0	19.2	2.0	6.5	13.3

주1. 인천고등법원은 추정치이고, 나머지 고등법원은 2020년 자료임
 주2: 서울고등법원은 기존 서울고등법원 자료에서 인천고등법원 추정치를 뺀 값임

4 인천고등법원 시민·전문가 수요 분석

◆ 조사개요

- 인천 고등법원에 대한 수요는 일반 시민 대상과 전문가(변호사) 대상 설문조사로 구분하여 진행
- 일반 시민의 경우 군·구와 남·여 등 할당으로 할 경우 직접적 수요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방법원 주변 통행인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 일반 시민대상 설문조사 개요

- 실시기간: 2022.06.15.~2022.06.18.
- 조사 방법: 인천지방법원 앞 직접 대면 설문조사
- 총 표본 수: 262명(남: 131명/여: 130명, 이 중 사법서비스 경험자 194명)

□ 전문가(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 실시기간: 2022.06.12.~2022.06.15.
- 조사 방법: 이메일, SNS를 활용한 서면조사
- 총 표본 수: 32명(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 최대 유도, 인천지역 관내 업무 비율 73.06%, 자기 사건 항소심 사건 비율 20.52%)

◆ 일반 시민 대상 조사결과

□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 87.8%

□ 인천시민의 사법서비스 이용현황에 대한 인식

- 고등법원이 서울에 있음으로 인하여 사법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원거리 이동의 불편함이 있다는 응답이 90.8%에 이르렀고, 소송을 위한 소송을 위한 제반 비용 증대도 90.4%에 이릅니다

□ 고등법원 미설립 이유

- 인천에 고등법원 미설립에 대한 이유는 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홍보 부족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82.1% 응답), 국회 등 정치권의 인천에 대한 관심 부족도 높게 나타남(전체 응답자의 79.1% 긍정)

□ 고등법원 설립의 긍정적 효과

- 인천고등법원 설립으로 긍정적 효과를 개인만족도 차원과 도시경쟁력 차원으로 구분하여 인식도를 조사함
- 개인만족도 부문에서는 이용자의 시간적 비용 절약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93.1%), 소송에 따른 경제적 비용 절감(88.9%), 시민의 사법적 권리 향상(82.5%) 순으로 나타남

- 도시경쟁력 부문에서는 인천고등법원 설립으로 인하여 지역 내 사법서비스 시장 및 일자리 확대 기대(87.4%), 사법서비스의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85.5%), 지역 내 전반적 사법서비스 질적 성장 기대(85.0%) 순으로 나타남

□ 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방안 및 정책적 노력

- 이에 따라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하여 인천시민들은 경제적 사회적 검증 및 설득 근거 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94.2%), 시민 공감대 형성과 의견제시 창구 마련(91.2%), 정치권 등의 적극적 설립 노력 필요(90.5%), 인천 시민의 설립을 위한 적극적 유치운동 전개(88.1%)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전문가(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 96.9%

□ 사법서비스 전문가(변호사)들의 입장에서 '인천시민들이 사법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한 점'에 대한 인식

- 응답한 전문가 모두가 소송 대상자인 인천 시민들이 원거리 이동의 불편함과 소송을 위한 제반 비용 증대(100%)가 있다고 응답함

□ 인천 고등법원 미설립 이유

- 일반 시민들과는 달리 국회 등 정치권의 인천에 대한 관심 부족(87.5%), 인천 위상 변화에 대한 낮은 인식(87.5%), 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홍보 부족(84.4%)에 대한 의견이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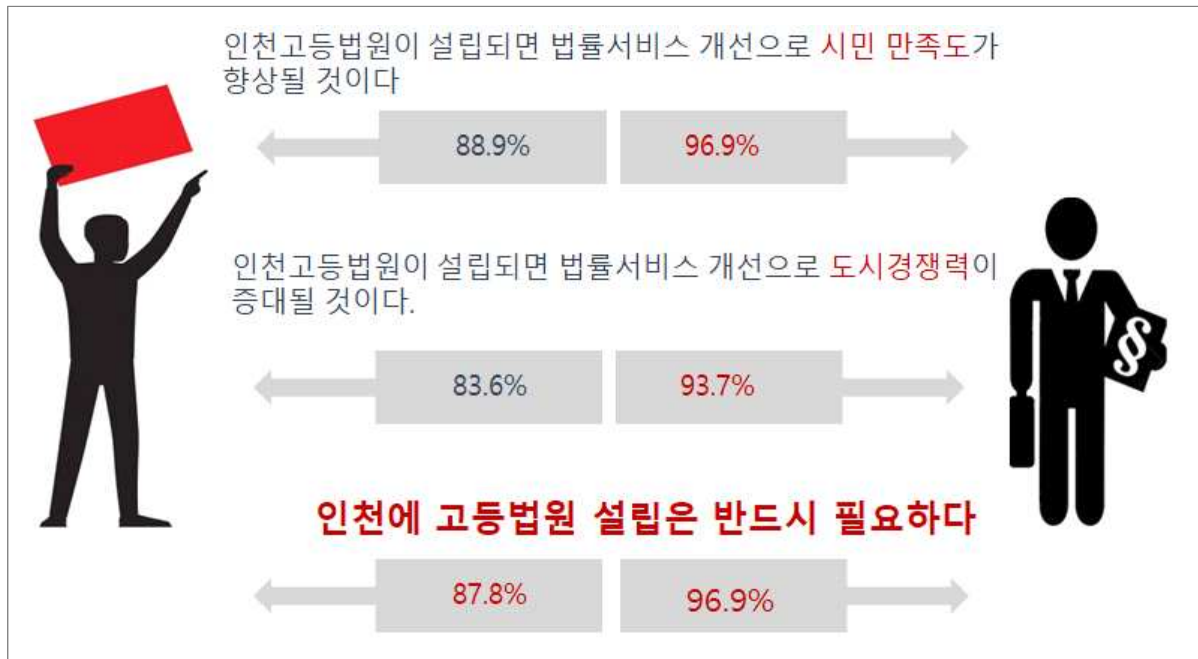
□ 고등법원 설립의 긍정적 효과

- 인천고등법원 설립으로 긍정적 효과를 개인만족도 차원과 도시경쟁력 차원으로 구분하여 인식도를 조사함
- 개인만족도 부문에서는 모든 전문가들이 이용자 시간적 비용 절약을 언급하였고, 시민의 사법적 권리 향상(93.8%), 인천시 특성에 부합하는 사법서비스 제공 효과(84.4%)를 높은 순으로 제기하고 있음. 즉 사법서비스 직접적 대리인인 변호사들은 보편적 시민 권리로서의 사법서비스 향유와 '인천시'라는 특성이 사법서비스에도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이러한 측면은 도시경쟁력 차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인천고등법원 설립으로 인하여 사법서비스의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90.7%),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고등법원 이미지 구축(90.6%), 지역 내 전반적 사법서비스 질적 성장 기대(87.6%)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음

□ 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방안 및 정책적 노력

- 변호사들은 시민 공감대 형성과 의견제시 창구 마련(96.9%), 정치권 등의 적극적 설립 노력 필요(96.9%), 경제적 사회적 검증 및 설득 근거 제시 필요(96.9%), 인천 시민의 설립을 위한 적극적 유치운동 전개(93.8%)가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음

[그림 3] 인천지역 사법서비스 여건 및 사법서비스 수요 시사점



◆ 시사점

□ 사법서비스의 지역 분산과 자치분권의 시각에서 고등법원 설립 필요

- 인천 고등법원 설립은 인천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향유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 분산이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음. 직접적인 사법서비스 경험자인 시민과 제공자인 변호사들이 사법서비스 접근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강하고 주장하고 있음
- 현재 인천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립을 통하여 이러한 사법서비스의 향유에 문제가 없다는 중앙집중적 시각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천시민과 이를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이러한 논리를 통한 고등법원 설립 이슈 제한에 대하여 대응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음
- 특히 전문가들은 시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편의성 측면 및 법원행정의 균형발전 취지 뿐만 아니라 대도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고등법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

- 인천 지역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
 - 인천 지역적 관점에서 사법서비스의 전문성, 도시경쟁력 및 지역 내 인적 자원의 역량 강화 측면에서도 고등법원 설립이 매우 중요
 - 또한, 전문가 조사에서 질적 응답을 통하여 인천 지역 내 로스쿨 발전에도 인천고등법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인천 관내 대학의 로스쿨을 통하여 배출된 인적 자원들이 서울로 흡수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법원과 국회, 인천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적극적 유치 노력을 해야 하며, 인천시민들의 자발적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홍보 노력들이 필요함이 제시되었음

5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법률 개정을 통한 인천고등법원 설립

-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해서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요구되며, 수원고등법원 설립 이전에는 행정구역 중심적 설립이, 수원고등법원 설립 이후 사법서비스 수요를 감안한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현재 고등법원 관련 법률은 지방자치제도와 정합성이 약하며, 서울 일극 중심적 법원 행정체계로 구성되어 있어서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 국민친화적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익숙한 형태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필요함

□ 충분한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여건

- 일반적 고등법원 설치 기준에서는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확산과 지방분산 배치,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내세우고 있음
- 고등법원 설치의 객관적 지표인 인구 규모, 소송 사건 수, 관할 면적 등을 살펴볼 때, 현재 서울고등법원의 사법서비스 제공이 과포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천의 경우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으나 서울고등법원까지의 평균 통행 시간이 편도 1시간 30분을 넘는 등 왕복에 3시간 이상으로 소요하고 있으며, 인천 지역의 경우 섬 지역인 옹진군과 강화군이 존재함으로 사법서비스 제공 편의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음

□ 인천고등법원 설치 시 항소심 추정결과는 1,844건 이상으로 고등법원 설립 요건에 부합

- 민사본안 합의와 가사소송, 행정소송, 형사공판 합의 등 인천 고등법원에 접수될 항소심 건수를 추정한 결과 1,844건으로 대구 고등법원의 현재 항소심 건수인 1,812건을 초과함
- 이를 단위 인구당으로 환산할 경우 대전, 대구, 수원보다 높음을 알 수 있음
- 인천과 주변 지역은 현재 인구 규모가 점차 늘고 있으며,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사법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인천 고등법원 설립이 매우 필요함

□ 인천고등법원 설립에 대한 시민 및 전문가 수요에서 매우 필요한 것으로 인식

- 인천 시민들의 경우(인천지방법원 인근 면대면 조사 결과),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가 87.8%로 매우 높았으며, 특히 전문가인 변호사 조사에는 인천고등법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6.9%에 달함
- 특히,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해서는 시민 공감대 형성과 의견제시 창구 마련, 정치권 등의 적극적 설립 노력과 인천 시민의 설립을 위한 적극적 유치운동 전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인천고등법원 설립에 대한 수요 조사나 계량적인 편익 이외에 비계량적 지역사회 파급효과 존재
 - 서울고등법원의 업무량 분산을 통한 국가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분권의 효과성 제고
 - 법률서비스 이용의 경제적 비용 및 시간 절약 가능
 - 수도권 지역 교통체증의 완화
 - 고령화시대의 노령인구의 법원 접근성 증진 및 서비스 수요 충족
 - 인천지역 내 기업 유치 가능성 제고

-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해서는 향후 지역 내 발생가능한 갈등 요소에 대한 지속적 관리
 - 입지선정을 위한 경쟁 과열과 지역 이익 실현을 위한 갈등 발생 우려. 인천고등법원 설립이 인천지역 전체의 숙원사업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갈등을 경계하고 지역사회의 필요에 대한 절박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과 공동된 의지 필요
 - 인천지역 외 고등법원 설립을 추진 중인 자치단체(의정부 등 경기북부 지역)와의 갈등도 존재할 수 있는 만큼 보다 합당한 근거와 관할권 조정 등 다양한 방향과 전략 마련 필요
 - 가장 최근 설립된 수원고등법원의 경우 부지와 설립방식, 예산편성과 증액과 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된 경험이 있는 만큼 유관기관과의 적극적 협력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버넌스 기제 마련 필요



발행처 인천연구원 **발행인** 이용식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화** 032.260.2600 www.ii.re.kr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슈브리프를 무단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 본 이슈브리프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